

『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』 지원계획 동의안

의안
번호 2018~90

제출일자 : 2018. 11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요구이유

- 2019. 3. 28일부터 승강기 안전인증 등 개정된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타워 및 관련시설로는 법적인증 업무수행에 애로
 - ※ 승강기 부품인증 : 6종 ⇒ 20종(확대), 모델인증 7종(신설)
- 승강기 안전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 인증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
- 거창승강기 안전인증센터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대한민국 승강기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계획

① (현행) 거창승강기R&D센터 부지(무상임대)

- 대상부지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
- 면 적 : 16,531.6㎡(5,009평)
- 지원내용 : 10년 무상사용허가(근거 :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 4)
- 사용용도 : 현행(6종) 승강기부품 인증업무 수행 및 기업지원, 진흥관 등
- 지원대상 : 현) KTL ⇒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김영기)



《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황 》

- 주요기능 : 승강기 안전·인증·검사·교육기관
- 조 직 : 본원(6층 1실 1단 17부), 지역사무소(7본부, 39지사, 4출장소)
- 정 원 : 1,244명(본원 160, 지역사무소 1,084)
- ※ 거창 안전인증센터 운영인력 : 120명/ 2024년까지

② (특별지원) 승강기농공단지 부지(입지보조금 지원)

- 대상부지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, 2422, 2424, 2425
- 면 적 : 18,143.9㎡(5,498평)
- 지 원 액 : 2,195,411,900원/ m²당 121,000원
- 지원내용 : 승강기공단 『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』 에 따른 부지매입비 전액지원

- 사용용도 : 안전인증센터 구축,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, 승강기 기술교육원 등
- 지원대상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김영기)
- 투자계획
 - 사업주체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경상남도, 거창군, 경남테크노파크
 - 사업위치 : 거창승강기밸리 일원
 - 사업면적 : 9,000㎡
 - 사업기간 : 2019년 ~ 2024년/ 6년
 - 투자계획 : 120명/ 85,000백만원 투자

구 분	건축면적 (부지의 70%)	연면적 (부지의 150%)	사업기간	사업예산 (백만원)	운영 인력	비 고
승강기인증센터구축	2,500㎡	5,000㎡	2019~2023	13,000	50명	승강기농공단지내
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	2,000㎡	6,000㎡	2020~2024	36,000	30명	"
승강기 기술교육원 건립	2,500㎡	8,100㎡	2021~2023	23,000	30명	"
승강기진흥관 건립	2,000㎡	3,865㎡	2021~2023	13,000	10명	일반산업단지내
합 계	9,000㎡	22,965㎡	2019~2024	85,000	120명	

나. 기대효과

- 공단 유치로 『세계승강기산업의 허브 거창』 입지 구축
- 공단과 거창군의 상생발전을 통한 승강기밸리 활성화
- 공단 이전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승강기 랜드마크 구축으로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승강기 경제도시 도약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4
- 국가균형특별법 제11조
-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

나. 소요예산

- 승강기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 : 2,195,411,900원을 '19년 본예산 반영

다. 「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」 추진계획 : 붙임참조

「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」 추진계획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「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」을 거창승강기밸리에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.

1 필요성

- 2019. 3. 28일부터 승강기 안전인증 등 개정된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타워 및 관련시설로는 법적인증 업무수행 애로
※ 승강기 부품인증 : 6종 ⇒ 20종(확대), 모델인증 7종(신설)
- 승강기 안전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 인증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

2 공단 투자계획

- 사업주체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김영기) / 진주소재
- 사업위치 : 거창승강기밸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9 ~ 2024년/ 6년
- 투자계획 : 120명/ 85,000백만원 투자

구 분	건축면적 (부지의 70%)	연면적 (부지의 150%)	사업기간	사업예산 (백만원)	운영 인력	비 고
승강기인증센터구축	2,500㎡	5,000㎡	2019~2023	13,000	50명	승강기농공단지내
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	2,000㎡	6,000㎡	2020~2024	36,000	30명	"
승강기 기술교육원 건립	2,500㎡	8,100㎡	2021~2023	23,000	30명	"
승강기진흥관 건립	2,000㎡	3,865㎡	2021~2023	13,000	10명	일반산업단지내
합 계	9,000㎡	22,965㎡	2019~2024	85,000	120명	

《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황 》

- 주요기능 : 승강기 안전·인증·검사·교육기관
- 조 직 : 본원(6층 1실 1단 17부), 지역사무소(7본부, 39지사, 4출장소)
- 정 원 : 1,244명(본원 160, 지역사무소 1,084)
※ 거창 안전인증센터 운영인력 : 120명/ 2024년까지

3 군 지원계획(안)

1 (현행) 거창승강기R&D센터 부지(무상임대)

- 지원근거 : 산집법 제47조,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4
- 대상부지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
- 면 적 : 16,531.6㎡(5,009평)
- 지원내용 : 10년 무상사용허가(근거 :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 4)
- 사용용도 : 현행(6종) 승강기부품 인증업무 수행 및 기업지원, 진흥관 등
- 지원대상 : 현) KTL ⇒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김영기)

2 (특별지원) 승강기농공단지 부지(입지보조금 지원)

- 지원근거 : 국가균형특별법 제11조, 거창승강기밸리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
- 면 적 : 18,143.9㎡(5,498평)
- 지원금액 : 2,195,411,900원/ m²당 121,000원
- 지원내용 : 「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」에 따른 부지매입비 전액 지원
- 사용용도 : 안전인증센터 구축, 재난안전 스마트승강기 기반구축, 기술교육원 건립 등
- 지원대상 :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김영기)

4 그간 추진사항

- 2018. 3. 27 :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공포 ☞ 시행(2019.3.28.)
- 2018. 4~7월 : 승강기공단⇔KTL⇔거창군⇔행안부⇔산자부 협의(10회)
- 2018. 8. 20 : 승강기공단 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업무이관 협약 체결
※ 실무협의회 운영 : 1차(8.28), 2차(9.6), 3차(9.18), 4차(10.18)
- 2018. 9. 19 : 승강기 안전인증센터 구축회의(행안부, 승강기공단, 거창군)
- 2018. 9월 : 신규 인증장비 구축을 위한 제작 발주(약12억)
- 2018. 10월 : 거창 시험동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용역 발주(약 4억)
- 2018. 10. 29 : 「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」 공단 제안서 제출

5 향후계획

- 2018. 11월 : 거창군의회 동의
- 2018. 11월 : 승강기공단&KTL간 양수·양도 계약 체결
- 2018. 12월 : 인증센터 건립 관련기관 업무협약(경남도거창군공단경남TP)
- 2018. 12월 : 승강기공단 거창승강기R&D센터로 이전
- 2019. 1~12월 : 시험타워 구축 전 타워 임대(수도권)
- 2019. 1월 : 안전인증센터 구축 추가분 부지매입 및 착수
- 2019. 1월 : 승강기공단 입지보조금 지원
- 2019. 3월 :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 수행/ 승강기공단
- 2019. 12월 : 승강기 시험타워 준공

6 기대효과

- 공단 유치로 『세계승강기산업의 허브 거창』 입지 구축
- 공단과 거창군이 상생발전을 통한 승강기밸리 활성화
- 승강기공단 이전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승강기 랜드마크 구축으로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승강기 경제도시

□ 위치도



□ 시설 배치도



관 련 법 규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47조(자금지원)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3조의 4(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)

④ 법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,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□ 국가균형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5.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□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

제7조(승강기산업체 투자지원)

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